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 공공데이터 정책·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2명(4급 또는 5급 3명, 5급 6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지방의정연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1개 과를 평가대상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관보업무 및 교육운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경력관 정원 2명(전문경력관 나군 2명)을 정원 2명(7급 2명)으로 전환하고, 공공기록물 관리 내실화를 위하여 국가기록원 하부조직의 명칭과 분장사항을 변경하며,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지방자치분권실 1개 과 등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반영하는 한편,

정부혁신조직실 정부혁신기획관·조직정책관·공공서비스정책관을 정부혁신기획관·공공데이터정책관·조직정책관으로, 디지털정부국 공공데이터정책관을 공공지능정책관으로 개편하고 하부기구 및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정보통계담당관”을 “데이터정보화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계담당관”을 “데이터정보화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부 내 데이터 관련 정책 총괄, 제도개선, 추진상황 확인·점검
제9조제2항 중 “조직정책관 및 공공서비스정책관으로 하며, 정부혁신기획관·조직정책관 및 공공서비스정책관”을 “공공데이터정책관 및 조직정책관으로 하며, 정부혁신기획관·공공데이터정책관 및 조직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8호”를 “제27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조직정책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26호부터 제42호”를 “공공데이터정책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28호부터 제39호까지, 제39조의2, 제40호부터 제41호까지, 제41의2”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공공서비스정책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43호”를 “조직정책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42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정보공개정책과·조직기획과·조직진단과·경제조직과·사회조직과·공공서비스혁신과·국민참여혁신과 및 민원제도혁신과”를 “국

민참여혁신과 · 민원제도혁신과 · 공공데이터정책과 · 정보공개정책과 · 공공데이터관리과 · 통합데이터분석센터 · 조직기획과 · 조직진단과 · 경제조직과 및 사회조직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의 운영 · 개선 및 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제9조제10항를 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 11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제16항부터 제19항까지로 한다.

제9조제16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조 제17항을 제11항으로 한다.

제9조제10항(중전의 제16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행정절차제도의 운영 · 개선 및 교육 · 홍보

제9조제11항(중전의 제17항)에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7호를 삭제한다.

13. 행정제도 개선 관련 홍보 및 언론보도 지원에 관한 사항

14.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제도 개선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에 대한 지원

15.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종합 계획의 수립 및 총괄 · 조정

16. 행정제도 개선 과제의 발굴 · 개선 · 사후관리 및 우수사례의 발굴 · 확산

제9조제12항 및 제1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⑫ 공공데이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제도·정책의 연구·개선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3. 공공데이터 관련 현황 조사 및 범정부 데이터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4. 공공데이터 관련 운영실태 조사 및 평가
 5. 공공데이터 포털의 구축 운영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6.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지원
 8.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 사업 발굴·추진
 10. 공공데이터 관련 공공기관의 민간 중복·유사 서비스 개발·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11.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발전 지원
 12.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훈련 및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13. 공공데이터 시책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14.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제도의 운영·개선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5. 데이터 공동활용 관련 기관 간 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 ⑭ 공공데이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진단

2. 공공데이터 표준화 정책 및 관련 표준의 제정·보급에 관한 사항
 3.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품질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국가기준데이터 등 주요 공공데이터의 관리·보존체계 및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5. 공공분야 데이터 관리체계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 및 점검
 6.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활용을 위한 공공·민간 데이터 수집·등록 및 검증에 관한 사항
 7. 공공기관 간 공동활용 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
 8. 공공기관 간 공동활용 데이터의 결합에 관한 사항
- ⑮ 통합데이터분석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 및 점검
2. 공공분야 데이터의 활용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구축·운영 및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4.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활용 관련 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5.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및 수행에 관한 사항
6.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술지원 및 공무원 등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7.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조치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8.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민간 협력에 관한 사항
9.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활용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10.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 결과 검증 및 정책 활용에 관한 사항

제10조제2항 중 “공공데이터정책관으로 하며, 공공데이터정책관”을 “공공지능정책관으로 하며, 공공지능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공데이터정책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42호부터 제69호”를 “공공지능정책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54호부터 제6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디지털정부국에 디지털정부기획과·디지털서비스정책과·지역디지털서비스과·국제디지털협력과·공공지능정책과·디지털자원정책과·디지털안전정책과 및 스마트행정기반과를 둔다.

제1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디지털정부정책과장”을 “디지털정부기획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9호를 제2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지능형 전자정부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제10조제7항부터 8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10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14항 및 15항을 각각 삭제한다.

- ⑦ 디지털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정부사업 수주·발주제도 및 정보시스템 감리에 관한 사항
2.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제도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고령자 등의 전자정부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에 관한 사

항

4. 행정기관 등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접근성·호환성 등 품질관리
실태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전자정부서비스 민간 개방 활성화 정책의 수립·시행 및 공통 플랫
폼 구축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6. 전자정부 관련 통합적 성과관리의 총괄·조정 및 제도 개선
7. 전자정부 정보자원 투자 및 성과관리 정책의 수립·추진
8. 전자정부 사업 중복투자 방지에 관한 사항
9. 전자정부 사업 및 지역정보화 사업의 사전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10. 공공애플리케이션 관련 성과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행정관리 역량평가 중 정보화 부문 총괄
12. 전자정부 관련 제품 도입·발주에 관한 사항
13. 전자정부 분야 선도 기술 수요의 창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4. 전자정부 분야 선도 응용서비스의 개발·제공 및 표준에 관한 사
항
15. 뉴미디어를 활용한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16. 전자정부 관련 재원의 조달·운용에 관한 사항
17.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사업 및 시범사업의 발굴·추진
18.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관리에 관한 사항
19. 전자정부지원사업 재원의 확보 및 관련 업무의 부처 간 조정에 관
한 사항

20. 전자정부 관련 전문기술의 지원에 관한 사항
21. 입법부·사법부 등 공공기관의 전자정부 추진 지원
22. 전자정부 공통서비스 및 공통기반의 구축·지원
23. 전자정부 플랫폼(Platform) 구축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에 관한 사항

⑧ 지역디지털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공분야의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전환 확산 관련 시책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정보화 시행계획의 총괄·조정
3.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평가 및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공통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정보화의 지원과 관련된 법인·단체의 육성 지원
6.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전문기관의
관리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
8. 남북한 간 전자정부 관련 교류 및 협력
9. 지방행정데이터 개방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0. 행정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행정공간정보 응용서비스의 개발·
확산
11. 지능정보기술을 접목한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2.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서비스 추진 및 확산
 13.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서비스 관련 성과분석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4. 맞춤형 서비스에 관한 제도의 연구·개선·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15. 맞춤형 서비스 성과관리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홍보
 16.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7. 각급 행정기관의 맞춤형 서비스 개선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에 대한
지원
 18. 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한 제도·정책의 기획·총괄 및 지원
 19. 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한 진단 및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20. 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한 조사·분석 및 연구
 21. 공공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⑩ 공공지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분야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공공분야 인공지능 신기술 도입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3. 공공분야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가공 및 공동
이용에 관한 사항
 4. 공공분야 인공지능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발굴, 수행, 기술 지원 및 교
육에 관한 사항
 5. 공공분야 인공지능 윤리 개발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공공분야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신규 서비스 개발·보급에 관한 사

항

7. 국민비서형(알림, 상담, 고지 등) 통합서비스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공공분야 인공지능 공통기반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9. 공공분야 개인 맞춤형 데이터 활용 서비스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수립·시행
 10. 공공분야 개인 맞춤형 데이터 활용 서비스 포털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1. 공공분야 개인 맞춤형 데이터 활용 서비스 이용 활성화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2. 전자증명서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13. 전자증명서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
 14. 전자증명서 관련 기관 간 협의·조정
 15.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
 16.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관련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 ⑪ 디지털자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정부 표준화 정책·제도 및 관련 표준의 제정·보급에 관한 사항
 2. 전자정부 정보자원관리 정책의 연구, 기획, 조정 및 법·제도 개선

3. 전자정부 정보자원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시책사업의 발굴
· 추진
4. 전자정부 정보자원의 현황 조사, 수준 진단 및 지원
5. 전자정부의 상호운용성에 관한 사항
6. 전자정부 관련 통계의 조사, 지표의 개발·보급 및 조사·연구
7. 전자정부 클라우드 시책 수립 및 도입·구축 지원
8. 행정서비스 및 정보의 연계·통합 방안 수립
9. 행정기관의 공동활용을 위한 응용 소프트웨어 및 표준시스템의 개발·보급 및 유지·관리 지원
10.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의 표준화 및 다기능 사무기기 규격의 제정
· 개정에 관한 사항
11. 전자정부 관련 제품 시험·평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이 고시된 정보보호시스템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12. 전자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및 확산 지원
13.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업무의 운영 지원
14. 행정정보 공유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15. 행정정보 공유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
16. 행정정보 공유를 위한 기관간 협의·조정 및 관리체계·기준·절차의 수립·시행
17. 행정정보 공유 신청에 대한 승인 및 교육·홍보 등 활성화

18. 행정정보 공유 서비스 확대를 위한 실태조사 및 현황조사
 19. 행정정보 공유 및 안정적인 공동이용 서비스 확보를 위한 유통 기반구축 계획의 수립·시행
 20. 행정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운영 및 공동이용정보 이력·품질관리
 21. 행정정보 공유 시스템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
 22.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운영 및 관련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 ⑫ 디지털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보안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보안수준의 조사 및 보안개선대책의 수립·시행
 3.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사이버침해사고의 예방·대응에 관한 사항
 4.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모의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6.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진단, 개선조치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정보보호 기관·단체의 육성·지원 및 신기술 도입 등에 관한 사항

8.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9.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10.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보안서버의 적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12. 행정기관 전자문서의 진본성 확보 및 검증체계의 수립·추진
13. 행정기관 정보보호 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14. 행정전자서명 인증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15. 행정전자서명 인증기관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16.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17. 모바일 기반의 디지털 형태 신분증(이하 이 항에서 “모바일 신분증”이라 한다) 도입 관련 기술·제도·정책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18. 모바일 신분증 시범사업 추진 및 확산에 관한 사항
19. 모바일 신분증 공통 플랫폼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⑬ 스마트행정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공공분야 업무환경 개선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협업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3. 신기술 기반의 전자적 의사소통 수단 도입 및 운영

4. 스마트워크센터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스마트워크센터 관련 법령·제도 개선 및 관련 기관 간 협의·조정
 6.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전자정부 클라우드 업무서비스 구축 및 운영
 8. 공공부문 영상회의 관련 기본계획 수립·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공공부문 영상회의 관련 법령·제도 개선 및 관련 기관 간 협의·조정
 10.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11.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의 구축에 관한 사항
 12. 모바일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행정기관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3.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보안성 확보에 관한 사항
 14. 행정기관 정보통신망 관련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15.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할당받은 아이피(IP) 주소 등 표준의 제정·개정
 16. 행정기관 공동활용을 위한 통신서비스의 개발·보급 및 확산
 17. 지방자치단체의 통신업무 지원 및 통신보안업무의 지도·점검
 18. 행정기관 내 인터넷전화 보급 및 활성화 정책의 수립·시행
 19. 행정기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의 수립 및 시행
- 제23조제2항 중 “교육총괄과”를 “교육총괄과·지방의정연수센터”로,

“정책리더양성과장”을 “지방의정연수센터장·정책리더양성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의정연수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의정연수 계획 수립·실시
2. 지방의정연수 과정 개발 및 운영
3. 지방의정연수 운영의 성과분석
4. 지방의정연수 교육교재 편찬 및 발간
5. 지방의정연수 강사 관리
6. 지방의정연수 관련 대외기관 협력

제25조제2항 중 “연구협력과 및 디지털기록혁신과”를 “기록협력과 및 디지털혁신과”로, “연구협력과장 및 디지털기록혁신과장”을 “기록협력과장 및 디지털혁신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한다.

10. 국가기록원 홍보에 관한 사항

제2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구협력과장”을 “기록협력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운영 관련 지원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4. 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 현황 평가계획의 수립·운영

5. 공공기관 기록물관리 실태 점검 계획의 수립 및 총괄

12. 기록물관리 우수자 등에 대한 포상

제2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디지털기록혁신과장”을 “디지털혁신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운영·개선

6. 전자기록물 인수 관련 기술 지원

12. 전자기록물의 보존포맷 변환

13. 기록관 표준 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개선

14. 공공기관의 클라우드기록관리시스템 운영·개선

15. 전자기록물 이관 관련 기술 지원

제26조의 제목 “(기록관리지원부)”를 “(기록관리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록관리지원부장”을 “기록관리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록관리지원부에 지원총괄과·행정기록지원과·특수기록지원과 및 공공기록지원과를 두되, 지원총괄과장”을 “기록관리부에 기록관리정책과·사회기록과·경제기록과 및 특수기록과를 두되, 기록관리정책과장”으로 하고, “행정기록지원과장·특수기록지원과장 및 공공기록지원과장”을 “사회기록과장·경제기록과장 및 특수기록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록관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기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공

- 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기록관리 정책 수립·총괄
2. 기록물 수집 정책의 수립·총괄 및 관련 통계 관리
 3. 기록물 생산현황제도의 운영·개선 및 총괄 관리
 4. 기록관·특수기록관의 설치·운영 관련 지원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5. 기록물 분류·평가 정책의 수립·총괄
 6. 기록물 분류체계, 단위과제 및 보존기간 등의 분석·운영·관리
 7. 기록물관리지침 수립 및 교육
 8. 유출된 국가 중요 기록물의 회수 및 총괄 관리
 9. 행정정보시스템의 전자기록물 관리를 위한 시스템 기획·개발 및 운영
 10. 비정형 전자기록물의 관리 정책 수립·시행 및 관리
 11. 시청각기록물·행정박물 수집·분류·평가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12. 정부간행물 수집 및 관리
 13. 회의록 및 속기록 관리의 총괄·조정
 14.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지침 작성 및 교육 실시
 15. 공공기관의 기록관리협의회 운영·지원
 16. 공공기관 관할 기록관의 기록관리 컨설팅 및 기록물관리 업무지원
 17. 공공기관의 기록물 생산현황 분석 및 관리
 18. 공공기관의 기록물 수집 관리

19.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사회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록물 인수·정리·등록 기준 마련 및 운영·관리
2. 기록물 인수·정리·등록계획의 수립·총괄
3. 기록물의 인수실·등록실 운영
4. 기록물 등록정보 변경기준 관리
5. 전자기록물 검수체계의 구축 및 개선
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영화필름 및 방송 프로그램의 인수·관리
7. 공공기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기관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같다) 관할 기록관의 기록관리 컨설팅 및 기록물관리 업무(사회기록 분야로 한정한다)의 지원
8. 공공기관의 기록물(사회기록 분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분류체계 및 생산기록물의 분석·관리·지원
9. 공공기관의 기록물 생산현황 분석 및 관리
10. 공공기관의 기록물 수집·이관 및 보존기간의 협의

⑤ 경제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한시기관 또는 폐지기관의 기록물 수집·관리정책의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2. 한시기관 또는 폐지기관의 기록물의 수집

3. 한시기관 또는 폐지기관 수집 기록물 정리·등록 및 기술·공개재
분류·재평가
4. 공공기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공
공기관 중 국가기관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같다)
관할 기록관의 기록관리 컨설팅 및 기록물관리 업무(경제기록 분야
로 한정한다)의 지원
5. 공공기관의 기록물(경제기록 분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
다) 분류체계 및 생산기록물의 분석·관리·지원
6. 공공기관의 기록물 생산현황 분석 및 관리
7. 공공기관의 기록물 수집·이관 및 보존기간의 협의
- ⑥ 특수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밀기록물의 생산·해제, 재분류 현황 관리 및 수집·분류·평가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2. 소장 비밀기록물의 해제·재분류 기준 수립·관리 및 시행
 3.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국내외 소재 기록물의 수집 기획 및 총괄
· 조정
 4. 국내외 소재 기록물의 소재정보 조사·수집
 5. 중요 기록물의 국가지정기록물 지정·관리·해제
 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영
화 필름 및 방송 프로그램의 수집
 7. 해외·민간 수집 기록물의 공개 관리

8. 특수기록관 기록물의 수집·분류·평가 정책의 수립·시행 및 운영
· 개선
9. 공공기관 관할 기록관의 기록관리 컨설팅 및 기록물관리 업무(통일
· 외교·안보·수사·정보기록 분야로 한정한다.)
10. 공공기관의 기록물(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분류체계 및 생산기록물의 분석·관리·지원
11. 공공기관의 기록물 생산현황 분석 및 관리
12. 공공기관의 기록물 수집·이관 및 보존기간의 협의

제27조의 제목 “(기록보존서비스부)”를 “(기록서비스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록보존서비스부장”을 “기록서비스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록보존서비스부에 서비스정책과·보존인수과”를 “기록서비스부에 서비스정책과·보존관리과”로, “보존인수과장”을 “보존관리과장”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4호 및 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의2. 기록물 서비스정책의 수립·개선 총괄
3. 기록물 통합검색 및 활용체계 구축·운영
4. 기록물의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체계 구축·운영 및 관리
6. 기록문화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시책 개발

제2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존인수과장”을 “보존관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8호, 제9호,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제13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7조제6항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제도 운영 및 개선

7.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시험 운영 및 자격증 발급 등 관리

제30조제2항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기록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31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12호 중 “전시관(정부대전청사 전시관을 포함한다)”을 “전시관의”로 한다.

11. 기록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49조제2항 중 “2명(5급 2명)”을 “2명(5급2명), 데이터 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1,599”를 “1,611”로 하고, 일반직 계 “1,570”을 “1,582”로 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6”을 “17”로 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를 “4”로 하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3”을 “27”로 하고, 행정주사·시설주사·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를 “7”로 하며, 행정주사·시설주사

· 공업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 “20”을 “22”로 하고, 행정주사보 · 사서주사보 · 전산주사보 · 학예연구사 · 기록연구사 · 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3”을 “4”로 하며,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3”을 “14”로 하고, “전문경력관 나군(관보 담당) 1”를 삭제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1,614”를 “1,626”으로 하고, 일반직 계 “1,585”를 “1,597”로 하며,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6”을 “17”로 하고,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를 “4”로 하며,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2”를 “26”으로 하고, 행정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를 “7”로 하며, 행정주사 · 시설주사 · 공업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 “20”을 “22”로 하고, 행정주사보 · 사서주사보 · 전산주사보 · 학예연구사 · 기록연구사 · 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3”을 “4”로 하며,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3”을 “14”로 하고, “전문경력관 나군(관보 담당) 1”를 삭제한다.

별표 3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05”를 각각 “110”으로 하고, 서기관 “6”을 “7”로 하며, 행정사무관 “17”을 “18”로 하고, 행정주사 “18”을 “20”으로 하며, 행정주사보 “13”을 “14”로 하고,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을 “2”로 하며, “전문경력관 나군(교육과정 담당) 1”를 삭제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06”을 각각 “111”로 하고, 서기관 “6”

을 “7”로 하며, 행정사무관 “17”을 “18”로 하고, 행정주사 “18”을 “20”으로 하며, 행정주사보 “15”를 “16”로 하고,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을 “2”로 하며, “전문경력관 나군(교육과정 담당) 1”를 삭제한다.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2]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55조 관련)

1. 행정안전부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지방자치분권실 주민참여협업과	8명 (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1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2) 재난관리실 기후재난대응과	5명 (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2023년 9월 30일까지
3) 비상대비정책국 위기관리지원과	2명 (4급 1명, 5급 1명)	2022년 2월 28일까지
4) 지방자치분권실 지구촌새마을과	0명	2023년 9월 30일까지
5) 재난관리실 재난안전통신망관리과	6명 (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2023년 9월 30일까지
6) 재난협력실 감염병재난대응과	4명 (4급 1명, 5급 2명, 7급 1명)	2023년 9월 30일까지

2. 행정안전부 소속기관

조직	정원	평가기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자치역량센터	0명	2023년 9월 30일까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의정연수센터	5명 (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2024년 6월 30일까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획조정실장) ① ~ ⑤ (생략)	제4조(기획조정실장)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 정책평가담당관 · 혁신행정담당관 · 법무담당관 · <u>정보통계담당관</u> · 행정한류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⑥ ----- ----- ----- <u>데이터정보화담당관</u> ----- ----- -----.
⑦ ~ ⑩ (생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⑪ <u>정보통계담당관</u> 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⑪ <u>데이터정보화담당관</u> ----- ----- -----.
1. ~ 14. (생략)	1. ~ 14.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5. 부 내 데이터 관련 정책 총괄, 제도개선, 추진상황 확인 · 점검</u>
⑫ · ⑬ (생략)	⑫ · ⑬ (현행과 같음)
제9조(정부혁신조직실) ① (생략)	제9조(정부혁신조직실)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부혁신조직실장 밑에 두는 보좌	② ----- ----- -----

기관은 정부혁신기획관·조직정책관 및 공공서비스정책관으로 하며, 정부혁신기획관·조직정책관 및 공공서비스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정부혁신기획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정부혁신조직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정부혁신조직실장을 보좌한다.

④ 조직정책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26호부터 제42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정부혁신조직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정부혁신조직실장을 보좌한다.

⑤ 공공서비스정책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43호부터 제58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정부혁신

-----공공데이터정책관 및 조직정책관으로 하며, 정부혁신기획관·공공데이터정책관 및 조직정책관-----

-----.

③ -----

-----제27호-----

-----.

④ 공공데이터정책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28호부터 제39호까지, 제39조의2, 제40호부터 제41호까지, 제41의2 -----

-----.

⑤ 조직정책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42호-----

신조직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정부혁신조직실장을 보좌한다.

⑥ 정부혁신조직실에 혁신기획과 · 협업정책과 · 정보공개정책과 · 조직기획과 · 조직진단과 · 경제조직과 · 사회조직과 · 공공서비스혁신과 · 국민참여혁신과 및 민원제도혁신과를 둔다.

⑦ · ⑧ (생략)

⑨ 협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2. (생략)

<신설>

⑩ (생략)

⑪ ~ ⑭ (생략)

<신설>

----.

⑥ -----

-----국민참여혁신과 · 민원제도혁신과 · 공공데이터정책과 · 정보공개정책과 · 공공데이터관리과 · 통합데이터분석센터 · 조직기획과 · 조직진단과 · 경제조직과 및 사회조직과-----.

⑦ · ⑧ (현행과 같음)

⑨ -----
-----.

1. ~ 22. (현행과 같음)

23.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의 운영 · 개선 및 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⑬ (현행 제10항과 같음)

⑮ ~ ⑲ (현행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와 같음)

⑫ 공공데이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제도 · 정책의 연구 · 개선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3. 공공데이터 관련 현황 조사
및 범정부 데이터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4. 공공데이터 관련 운영실태
조사 및 평가
5. 공공데이터 포털의 구축 운
영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6.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및 실
무위원회 운영·지원
8.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
성화에 관한 시책 사업 발굴
· 추진
10. 공공데이터 관련 공공기관
의 민간 중복·유사 서비스
개발·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11.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발전
지원

<신 설>

12.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훈련 및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13. 공공데이터 시책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14.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제도의 운영·개선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5. 데이터 공동활용 관련 기관 간 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⑭ 공공데이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진단

2. 공공데이터 표준화 정책 및 관련 표준의 제정·보급에 관한 사항

3.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품질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국가기준데이터 등 주요 공공데이터의 관리·보존체계 및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5. 공공분야 데이터 관리체계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 및 점검

6.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활용

⑮ 공공서비스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맞춤형 서비스에 관한 제도의 연구·개선
2. 맞춤형 서비스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3. 맞춤형 서비스 성과관리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4. 맞춤형 서비스 및 행정제도 개선 관련 홍보 및 언론보도 지원에 관한 사항
5.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6. 각급 행정기관의 맞춤형 서비스 및 행정제도 개선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에 대한 지원
7. 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한 제도·정책의 기획·총괄 및 지원

을 위한 공공·민간 데이터 수집·등록 및 검증에 관한 사항

7. 공공기관 간 공동활용 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

8. 공공기관 간 공동활용 데이터의 결합에 관한 사항

⑮ 통합데이터분석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 및 점검
2. 공공분야 데이터의 활용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구축·운영 및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4.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활용 관련 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5.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및 수행에 관한 사항
6.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술지원 및 공무원 등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8. 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한 진단 및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9. 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한 조사·분석 및 연구

10.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11. 행정제도 개선 과제의 발굴·개선·사후관리 및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12. 행정절차제도의 운영·개선 및 교육·홍보

13. 공공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⑩ 국민참여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8. (생략)

<신설>

⑪ 민원제도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2. (생략)

13. 전자증명서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14. 전자증명서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

7.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조치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8.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9.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활용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10.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 결과 검증 및 정책 활용에 관한 사항

10.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 결과 검증 및 정책 활용에 관한 사항

⑩-----
-----.

1. ~ 18. (현행과 같음)

19. 행정절차제도의 운영·개선 및 교육·홍보

⑪-----
-----.

1. ~ 12. (현행과 같음)

13. 행정제도 개선 관련 홍보 및 언론보도 지원에 관한 사항

14.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제도 개선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에 대한 지원

15. 전자증명서 관련 기관 간 협의 · 조정

16. 전자증명서 발급 · 유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

17. 전자증명서 발급 · 유통시스템 관련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제10조(디지털정부국) ① (생략)

②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디지털정부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공공데이터정책관으로 하며, 공공데이터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공공데이터정책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42호부터 제69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디지털정부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디지털정부국장을 보좌한다.

④ 디지털정부국에 디지털정부정책과 · 디지털정부기반과 · 디

15.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 · 조정

16. 행정제도 개선 과제의 발굴 · 개선 · 사후관리 및 우수사례의 발굴 · 확산

<삭 제>

제10조(디지털정부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 공공지능정책관으로 하며, 공공지능정책관-----

-----.

③ 공공지능정책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54호부터 제62호---

-----.

④ 디지털정부국에 디지털정부기획과 · 디지털서비스정책과 ·

지털안전정책과 · 지역디지털협력과 · 국제디지털협력과 · 공공데이터정책과 · 공공데이터유통과 · 빅데이터분석활용과 · 공공지능정책과 및 지능행정기반과를 둔다.

⑤ (생략)

⑥ 디지털정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8. (생략)

<신설>

19. (생략)

<신설>

지역디지털서비스과 · 국제디지털협력과 · 공공지능정책과 · 디지털자원정책과 · 디지털안전정책과 및 스마트행정기반과를 둔다.

⑤ (현행과 같음)

⑥ 디지털정부기획과장-----
-----.

1. ~ 18. (현행과 같음)

19. 지능형 전자정부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20. (현행 제19호와 같음)

⑦ 디지털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정부사업 수주 · 발주제도 및 정보시스템 감리에 관한 사항

2.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제도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 고령자 등의 전자정부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에 관한 사항

4. 행정기관 등이 운영하는 웹사이트·호환성 등 품질관리 실태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전자정부서비스 민간 개방
활성화 정책의 수립·시행 및
공통 플랫폼 구축 등 기반 조
성에 관한 사항
6. 전자정부 관련 통합적 성과
관리의 총괄·조정 및 제도 개
선
7. 전자정부 정보자원 투자 및
성과관리 정책의 수립·추진
8. 전자정부 사업 중복투자 방
지에 관한 사항
9. 전자정부 사업 및 지역정보
화 사업의 사전협의·조정에 관
한 사항
10. 공공애플리케이션 관련 성
과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행정관리 역량평가 중 정보
화 부문 총괄
12. 전자정부 관련 제품 도입·
발주에 관한 사항
13. 전자정부 분야 선도 기술 수
요의 창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4. 전자정부 분야 선도 응용서
비스의 개발·제공 및 표준에
관한 사항

<신 설>

15. 뉴미디어를 활용한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16. 전자정부 관련 재원의 조달
· 운용에 관한 사항

17.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
사업 및 시범사업의 발굴·추진

18.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
관리에 관한 사항

19. 전자정부지원사업 재원의
확보 및 관련 업무의 부처 간
조정에 관한 사항

20. 전자정부 관련 전문기술의
지원에 관한 사항

21. 입법부·사법부 등 공공기
관의 전자정부 추진 지원

22. 전자정부 공통서비스 및 공
통기반의 구축·지원

23. 전자정부 플랫폼(Platform)
구축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⑧ 지역디지털서비스과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공분
야의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
술 전환 확산 관련 시책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정보화 시행계획의 총괄·조정
3.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평가 및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공통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정보화의 지원과 관련된
법인·단체의 육성 지원
6.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
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전
문기관의 관리 및 운영 지원
에 관한 사항
7.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
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
8. 남북한 간 전자정부 관련 교
류 및 협력
9. 지방행정데이터 개방 시스템
의 구축 및 운영
10. 행정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행정공간정보 응용서비스
의 개발·확산
11. 지능정보기술을 접목한 지
방자치단체 영상정보 통합관

제센터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2.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서비스 추진 및 확산

13.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서비스 관련 성과 분석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4. 맞춤형 서비스에 관한 제도의 연구·개선·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15. 맞춤형 서비스 성과관리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홍보

16.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7. 각급 행정기관의 맞춤형 서비스 개선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에 대한 지원

18. 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한 제도·정책의 기획·총괄 및 지원

19. 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한 진단 및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20. 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한 조사·분석 및 연구

⑩ (생략)

<신설>

21. 공공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⑨ (현행 제10항과 같음)

⑩ 공공지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분야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공공분야 인공지능 신기술 도입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3. 공공분야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가공 및 공동 이용에 관한 사항

4. 공공분야 인공지능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발굴, 수행, 기술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공공분야 인공지능 윤리 개발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공공분야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신규 서비스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7. 국민비서형(알림, 상담, 고지 등) 통합서비스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공공분야 인공지능 공통기반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활용

<신 설>

지원에 관한 사항

9. 공공분야 개인 맞춤형 데이터 활용 서비스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수립·시행

10. 공공분야 개인 맞춤형 데이터 활용 서비스 포털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1. 공공분야 개인 맞춤형 데이터 활용 서비스 이용 활성화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2. 전자증명서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13. 전자증명서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

14. 전자증명서 관련 기관 간 협의·조정

15.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

16.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관련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⑪ 디지털자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정부 표준화 정책·제도 및 관련 표준의 제정·보급에 관한 사항

2. 전자정부 정보자원관리 정책
의 연구, 기획, 조정 및 법·제
도 개선
3. 전자정부 정보자원관리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 및 시책사
업의 발굴·추진
4. 전자정부 정보자원의 현황
조사, 수준 진단 및 지원
5. 전자정부의 상호운용성에 관
한 사항
6. 전자정부 관련 통계의 조사,
지표의 개발·보급 및 조사·
연구
7. 전자정부 클라우드 시책 수
립 및 도입·구축 지원
8. 행정서비스 및 정보의 연계
·통합 방안 수립
9. 행정기관의 공동활용을 위한
응용 소프트웨어 및 표준시스
템의 개발·보급 및 유지·관
리 지원
10.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의
표준화 및 다기능 사무기기
규격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
항
11. 전자정부 관련 제품 시험·

평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이 고시된 정보보호시스템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12. 전자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및 확산 지원

13.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업무의 운영 지원

14. 행정정보 공유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15. 행정정보 공유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

16. 행정정보 공유를 위한 기관 간 협의·조정 및 관리체계·기준·절차의 수립·시행

17. 행정정보 공유 신청에 대한 승인 및 교육·홍보 등 활성화

18. 행정정보 공유 서비스 확대를 위한 실태조사 및 현황조사

19. 행정정보 공유 및 안정적인 공동이용 서비스 확보를 위한 유통 기반구축 계획의 수립·시행

<신 설>

20. 행정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 운영 및 공동이용정보 이력
- 품질관리

21. 행정정보 공유 시스템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

22.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운영 및 관련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⑫ 디지털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보안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보안수준의 조사 및 보안개선 대책의 수립·시행
3.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사이버침해사고의 예방·대응에 관한 사항
4.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모의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6.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진단, 개선조치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정보보호 기관·단체의 육성·지원 및 신기술 도입 등에 관한 사항

8.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9.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10.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보안서버의 적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12. 행정기관 전자문서의 진본성 확보 및 검증체계의 수립·추진

13. 행정기관 정보보호 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14. 행정전자서명 인증에 관한

<신 설>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15. 행정전자서명 인증기관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16.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
의 운영에 관한 사항

17. 모바일 기반의 디지털 형태
신분증(이하 이 항에서 “모바
일 신분증”이라 한다) 도입 관
련 기술·제도·정책의 연구
·개선에 관한 사항

18. 모바일 신분증 시범사업 추
진 및 확산에 관한 사항

19. 모바일 신분증 공통 플랫폼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⑬ 스마트행정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공공
분야 업무환경 개선 정책 수
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협업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
· 운영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3. 신기술 기반의 전자적 의사
소통 수단 도입 및 운영

4. 스마트워크센터 관련 기본계
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스마트워크센터 관련 법령 · 제도 개선 및 관련 기관 간 협의 · 조정
6.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전자정부 클라우드 업무서비스 구축 및 운영
8. 공공부문 영상회의 관련 기본계획 수립 ·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공공부문 영상회의 관련 법령 · 제도 개선 및 관련 기관 간 협의 · 조정
10.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11.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의 구축에 관한 사항
12. 모바일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행정기관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3.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보안성 확보에 관한 사항
14. 행정기관 정보통신망 관련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15.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할당받은 아이피(IP) 주소 등 표

⑭ 공공지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능형 전자정부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공공분야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3. 공공분야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공공분야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가공 및 공동 이용에 관한 사항
5. 공공분야 인공지능 관련 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6. 공공분야 인공지능 활성화를

준의 제정·개정

16. 행정기관 공동활용을 위한 통신서비스의 개발·보급 및 확산
17. 지방자치단체의 통신업무 지원 및 통신보안업무의 지도·점검
18. 행정기관 내 인터넷전화 보급 및 활성화 정책의 수립·시행
19. 행정기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의 수립 및 시행

<삭 제>

- 위한 과제 발굴, 수행, 기술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공공분야 인공지능 윤리 개발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8. 공공분야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신규 서비스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9. 인공지능 기반 국민비서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통 플랫폼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0. 인공지능 기반 통합 민원상담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11. 공공분야 인공지능 공통기반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12. 정보통신의 융합 등 전자정부 발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협력사업의 추진
13. 신기술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정비에 관한 사항
14. 전자정부 분야 선도 기술 수요의 창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5. 전자정부 분야 선도 응용서

비스의 개발·제공 및 표준에
관한 사항

16. 전자정부 분야 선도 기술의
활용 관련 연구 및 관련 기관
· 단체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17. 전자정부사업 전문기관의
육성 및 지원

18. 뉴미디어를 활용한 전자정
부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19. 전자정부 관련 재원의 조달
· 운용에 관한 사항

20.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
사업 및 시범사업의 발굴·추
진

21.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
관리에 관한 사항

22. 전자정부지원사업 재원의
확보 및 관련 업무의 부처 간
조정에 관한 사항

23. 전자정부 관련 전문기술의
지원에 관한 사항

24. 입법부·사법부 등 공공기
관의 전자정부 추진 지원

⑮ 지능행정기반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삭 제>

1.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공공 분야 업무환경 개선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의 운영·개선 및 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3. 협업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신기술 기반의 전자적 의사소통 수단 도입 및 운영
5. 스마트워크센터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6. 스마트워크센터 관련 법령·제도 개선 및 관련 기관 간 협의·조정
7.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전자정부 클라우드 업무서비스 구축 및 운영
9. 공공부문 영상회의 관련 기본계획 수립·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공공부문 영상회의 관련 법령·제도 개선 및 관련 기관 간 협의·조정

11.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12.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의 구축에 관한 사항

13. 모바일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행정기관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4.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보안성 확보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제23조(교수부) ① (생략)

② 교수부에 교육총괄과·정책리더양성과·전문역량교육과 및 지방자치역량센터를 두되, 교육총괄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정책리더양성과장·전문역량교육과장 및 지방자치역량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생략)

<신 설>

제23조(교수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교육총괄과·지방의정연수센터-----

----- 지방의정연수센터장·정책리더양성과장-----

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의정연수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의정연수 계획 수립·실시

④ ~ ⑥ (생략)

제25조(기록정책부) ① (생략)

② 기록정책부에 행정지원과·정책기획과·연구협력과 및 디지털기록혁신과를 두되, 행정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정책기획과장·연구협력과장 및 디지털기록혁신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생략)

2. 지방의정연수 과정 개발 및 운영

3. 지방의정연수 운영의 성과분석

4. 지방의정연수 교육교재 편찬 및 발간

5. 지방의정연수 강사 관리

6. 지방의정연수 관련 대외기관 협력

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제25조(기록정책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기록협력과 및 디지털혁신과-----

-----기록협력과장 및 디지털혁신과장-----

-----.

③ (현행과 같음)

④ 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략)

10.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제도 운영 및 개선

11.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 시험 운영 및 자격증 발급 등 관리

<신설>

④ -----
-----.

1. ~ 9. (현행과 같음)

10. 국가기록원 홍보에 관한 사항

<삭제>

⑤ 기록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국제 교류·협력

2. 국내 다른 기록물관리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연계·협조

3. 기록물관리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기획·총괄 및 수행

4. 정책연구용역의 심의·조정

5. 기록물관리 관련 학술정보지 제작, 발간 및 배포

6. 기록관리 포럼·세미나 운영

7.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

8. 국제기록유산센터 운영 지원

9. 기록물관리 우수자 등에 대한 포상

⑥ <u>디지털기록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 2. (생략) 3. <u>행정정보시스템의 전자기록물 관리를 위한 시스템 기획 · 개발 및 운영</u> 4. · 5. (생략) 6. <u>비정형 전자기록물의 관리 정책 수립 · 시행 및 관리</u> 7. ~ 11.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제26조(<u>기록관리지원부</u>) ① <u>기록</u>	10. <u>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 운영 관련 지원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u> 11. <u>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 현황 평가계획의 수립 · 운영</u> 12. <u>공공기관 기록물관리 실태 점검 계획의 수립 및 총괄</u> ⑥ <u>디지털혁신과장</u>----- -----. 1. · 2. (현행과 같음) 3. <u>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운영 · 개선</u> 4. · 5. (현행과 같음) 6. <u>전자기록물 인수 관련 기술 지원</u> 7. ~ 11. (현행과 같음) 12. <u>전자기록물의 보존포맷 변환</u> 13. <u>기록관 표준 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 · 개선</u> 14. <u>공공기관의 클라우드기록관리시스템 운영 · 개선</u> 15. <u>전자기록물 이관 관련 기술 지원</u> 제26조(<u>기록관리부</u>) ① <u>기록관리</u>
---	--

관리지원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록관리지원부에 지원총괄과 · 행정기록지원과 · 특수기록지원과 및 공공기록지원과를 두되, 지원총괄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학예연구관 · 기록연구관 · 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행정기록지원과장 · 특수기록지원과장 및 공공기록지원과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학예연구관 · 기록연구관 · 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신 설>

부장-----

-----.

② 기록관리부에 기록관리정책과 · 사회기록과 · 경제기록과 및 특수기록과를 두되, 기록관리정책과장-----

사회기록과장 · 경제기록과장 및 특수기록과장-----

----- 보한다

③ 기록관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기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기록 관리 정책 수립 · 총괄

2. 기록물 수집 정책의 수립 · 총괄 및 관련 통계 관리

3. 기록물 생산현황제도의 운영

· 개선 및 총괄 관리

4. 기록관·특수기록관의 설치

· 운영 관련 지원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5. 기록물 분류·평가 정책의

수립·총괄

6. 기록물 분류체계, 단위과제

및 보존기간 등의 분석·운영
· 관리

7. 기록물관리지침 수립 및 교

육

8. 유출된 국가 중요 기록물의

회수 및 총괄 관리

9. 행정정보시스템의 전자기록

물 관리를 위한 시스템 기획
· 개발 및 운영

10. 비정형 전자기록물의 관리

정책 수립·시행 및 관리

11. 시청각기록물·행정박물 수

집·분류·평가 정책의 수립

<신 설>

· 총괄 · 조정

12. 정부간행물 수집 및 관리

13. 회의록 및 속기록 관리의 총
괄 · 조정

14.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지침
작성 및 교육 실시

15. 공공기관의 기록관리협의회
운영 · 지원

16. 공공기관 관할 기록관의 기
록관리 컨설팅 및 기록물관리
업무지원

17. 공공기관의 기록물 생산현
황 분석 및 관리

18. 공공기관의 기록물 수집 관
리

19.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사
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사회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록물 인수 · 정리 · 등록 기
준 마련 및 운영 · 관리

2. 기록물 인수 · 정리 · 등록계

획의 수립·총괄

3. 기록물의 인수·등록·운영

4. 기록물 등록정보 변경기준 관리

5. 전자기록물 검수체계의 구축 및 개선

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및제4항에 따른 영화필름 및 방송 프로그램의 인수·관리

7. 공공기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기관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같다) 관할 기록관의 기록관리 컨설팅 및 기록물관리 업무(사회기록 분야로 한정한다)의 지원

8. 공공기관의 기록물(사회기록 분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분류체계 및 생산 기록물의 분석·관리·지원

9. 공공기관의 기록물 생산현황 분석 및 관리

10. 공공기관의 기록물 수집·

<신 설>.

이관 및 보존기간의 협의

⑤ 경제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한시기관 또는 폐지기관의 기록물 수집·관리정책의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2. 한시기관 또는 폐지기관의 기록물의 수집

3. 한시기관 또는 폐지기관 수집 기록물 정리·등록 및 기술·공개재분류·재평가

4. 공공기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기관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같다) 관할 기록관의 기록관리 컨설팅 및 기록물관리 업무(경제기록 분야로 한정한다)의 지원

5. 공공기관의 기록물(경제기록 분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분류체계 및 생산 기록물의 분석·관리·지원

6. 공공기관의 기록물 생산현황 분석 및 관리

7. 공공기관의 기록물 수집·이

<신 설>

관 및 보존기간의 협의

⑥ 특수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밀기록물의 생산·해제, 재
분류 현황 관리 및 수집·분
류·평가정책의 수립·총괄·
조정
2. 소장 비밀기록물의 해제·재
분류 기준 수립·관리 및 시
행
3.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국
내외 소재 기록물의 수집 기
획 및 총괄·조정
4. 국내외 소재 기록물의 소재
정보 조사·수집
5. 중요 기록물의 국가지정기록
물 지정·관리·해제
9. 공공기관 관할 기록관의 기
록관리 컨설팅 및 기록물관리
업무(통일·외교·안보·수사
·정보기록 분야로 한정한다.)
10. 공공기관의 기록물(통일·
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
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분류체계 및 생산기록
물의 분석·관리·지원

제27조(기록보존서비스부) ① 기록보존서비스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록보존서비스부에 서비스정책과·보존인수과·복원관리과 및 기록관리교육센터를 두되, 서비스정책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존인수과장·복원관리과장 및 기록관리교육센터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략)

1의2. 기록물 서비스정책 및 보

11. 공공기관의 기록물 생산현황 분석 및 관리

12. 공공기관의 기록물 수집·이관 및 보존기간의 협의

제27조(기록서비스부) ① 기록서비스부장-----

--.

② 기록서비스부에 서비스정책과·보존관리과-----

----- 보존관리과장-----

③ -----
-----.

1. (현행과 같음)

1의2. 기록물 서비스정책의 수

<u>존 · 복원정책 수립 · 총괄</u>	<u>립 · 개선 총괄</u>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u>소장 비밀기록물의 해제 · 재</u> <u>분류 기준 수립 · 관리 및 시</u> <u>행</u>	3. <u>기록물 통합검색 및 활용체</u> <u>계 구축 · 운영</u>
4. <삭제>	4. <u>기록물의 대국민 온라인 서</u> <u>비스체계 구축 · 운영 및 관리</u>
5. (생략)	5. (현행과 같음)
<신설>	6. <u>기록문화 활용 및 확산을 위</u> <u>한 시책 개발</u>
7. ~ 20. (생략)	7. ~ 20. (현행과 같음)
④ <u>보존인수과장</u>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u>보존관리과장</u> ----- -----.
1. <u>기록물 인수 · 정리 · 등록 기</u> <u>준 마련 및 운영 · 관리</u>	<삭제>
2. <u>기록물 인수 · 정리 · 등록계</u> <u>획의 수립 · 총괄</u>	<삭제>
3. ~ 7. (생략)	3. ~ 7. (현행과 같음)
8. <u>기록물의 인수실 · 등록실 운</u> <u>영</u>	<삭제>
9. <u>기록물 등록정보 변경기준</u> <u>관리</u>	<삭제>
10. · 11. 삭제	
12. ~ 16. (생략)	12. ~ 16. (현행과 같음)
17. <u>전자기록물 검수체계의 구</u> <u>축 및 개선</u>	<삭제>

⑤ 복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 략) 5. ~ 12. (생 략) <u>13.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운영·개선</u> <u>14. 전자기록물 인수 관련 기술지원</u> <u>15. 전자기록물의 보존포맷 변환</u> <u>16. 기록물 통합검색 및 활용체계 구축·운영</u> <u>17. 기록물의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체계 구축·운영 및 관리</u> 18. (생 략) ⑥ 기록관리교육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 략) <u><신 설></u> <u><신 설></u> 6. (생 략) 제30조(역사기록관) ① (생 략)	⑤ ----- -----. 1. ~ 4. (현행과 같음) 5. ~ 12.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18. (현행과 같음) ⑥ ----- -----. 1. ~ 5. (현행과 같음) <u>6.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제도 운영 및 개선</u> <u>7.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시험 운영 및 자격증 발급 등 관리</u> <u>8. (현행 제6호와 같음)</u> 제30조(역사기록관) ① (현행과 같음)
--	---

② 역사기록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략) 8. <u>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국내외 소재 기록물의 수집 기획 및 총괄·조정</u> 9. <u>국내외 소재 기록물의 소재 정보 조사·수집</u> 10. <u>중요 기록물의 국가지정기록물 지정·관리·해제</u> 11. 「<u>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u>」 제4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u>영화 필름 및 방송 프로그램의 수집</u> <u><신설></u> 12. (생략) 13. <u>해외·민간 수집 기록물의 공개 관리</u> 14. ~ 16. (생략) 제31조(행정기록관) ① (생략) ② 행정기록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략)	② ----- -----. 1. ~ 7. (현행과 같음) <u><삭제></u> <u><삭제></u> <u><삭제></u> <u><삭제></u> 12. <u>기록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u> 8. (현행 제12호와 같음) <u><삭제></u> 9. ~ 11. (현행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와 같음) 제31조(행정기록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	--

<u>4. 한시기관 또는 폐지기관의 기록물 수집·관리정책의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u> <u>5. 한시기관 또는 폐지기관의 기록물의 수집</u> <u>6. ~ 9. (생략)</u> <u>10. 정부간행물 수집 및 관리</u> <u>11. 한시기관 또는 폐지기관 수집 기록물 정리·등록 및 기술·공개재분류·재평가</u> <u>12. 전시관(정부대전청사 전시관을 포함한다) 운영 및 견학·기록문화 프로그램의 기획·운영</u> <u>13. · 14. (생략)</u> 제49조(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②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8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2명, 6급 1명, 7급 2명), 정보시스템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3명(5급 2명, 6급 1명), 공무를 수행	<u><삭 제></u> <u><삭 제></u> <u>4. ~ 7. (현행 제6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u> <u><삭 제></u> <u>11. 기록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u> <u>8. 전시관의</u> ----- -- <u>9. · 10. (현행 제13호 및 제14호와 같음)</u> 제49조(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특수재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4명(5급 4명), 안전사고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2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37명(4급 4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9명, 6급 8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생략)	----- ----- ----- ----- ----- -----, <u>데이터 분석</u> <u>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u>----- ----- ----- -----. ③ (현행과 같음)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2]

행정안전부 공무원 정원표(제49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1,599</u>	• <u>1,611</u>	+12
일반직 계	• <u>1,570</u>	• <u>1,582</u>	+12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 <u>16</u>	• <u>17</u>	+1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u>2</u>	• <u>4</u>	+2
	•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 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	<u>23</u> · ·	<u>27</u> · ·	+4
행정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	<u>5</u> · ·	<u>7</u> · ·	+2
행정주사 · 시설주사 · 공업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 · ·	<u>20</u> · ·	<u>22</u> · ·	+2
행정주사보 · 사서주사보 · 전산 주사보 · 학예연구사 · 기록연구 사 · 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 ·	<u>3</u> · ·	<u>4</u> · ·	+1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 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u>13</u>	<u>14</u>	+1
·	·	·	
·	·	·	
<u>전문경력관 나군(관보 담당)</u>	<u>1</u>	<u><삭 제></u>	-1
·	·	·	
·	·	·	

[별표 2의2]

행정안전부 공무원 정원표(제49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1,614</u>	• <u>1,626</u>	+12
일반직 계	• • <u>1,585</u>	• • <u>1,597</u>	+12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 • <u>16</u>	• • <u>17</u>	+1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 <u>2</u>	• • <u>4</u>	+2
• •	•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 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	<u>22</u> · ·	<u>26</u> · ·	+4
행정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	<u>5</u> · ·	<u>7</u> · ·	+2
행정주사 · 시설주사 · 공업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 · ·	<u>20</u> · ·	<u>22</u> · ·	+2
행정주사보 · 사서주사보 · 전산 주사보 · 학예연구사 · 기록연구 사 · 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 ·	<u>3</u> · ·	<u>4</u> · ·	+1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 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u>13</u>	<u>14</u>	+1
·	·	·	
·	·	·	
<u>전문경력관 나군(관보 담당)</u>	<u>1</u>	<u><삭 제></u>	-1
·	·	·	
·	·	·	

[별표 3]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105	110	+5
일반직 계	105	110	+5
서기관	6	7	+1
행정사무관	17	18	+1
행정주사	18	20	+2
행정주사보	13	14	+1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2	+1
전문경력관 나군(교육과정 담당)	1	<삭 제>	-1

[별표 3의2]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106	111	+5
일반직 계	106	111	+5
서기관	6	7	+1
행정사무관	17	18	+1
행정주사	18	20	+2
행정주사보	15	16	+1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2	+1
전문경력관 나군(교육과정 담당)	1	<삭 제>	-1